

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재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19-97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일자	2019. 9. .
발 의 자	권재경, 이흥희, 김향란, 박수자, 신재화, 이재운, 최정환, 표주숙, 김종두, 심재수, 김태경 의원 (인)

1. 제안이유

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지역을 확대하고, 상위법의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이 「학교보건법」에서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로 이월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(안 제4조제2호)
나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(안 제4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

- 나. 예산조치 :
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보건소

- 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- 가) 예고기간 : 2019. 9. 4. ~ 9. 10.

- 나) 예고결과 :

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- 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항 제2호·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4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생략 2. 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. 생략 4.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~③ (생략)	제4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. (현행과 같음) 4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.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~③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

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(이하 "학교경계등"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
2. 상대보호구역: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·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 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설정·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1.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(移轉)하게 된 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

2.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

3.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

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□ 도로교통법 제12조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28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, 2018. 3. 27.>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

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7.>[전문개정 2011. 6. 8.]